

비수도권 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통과 건의

2023. 3. 30

비수도권 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통과 건의

I.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경제·문화·의료·교육 등 모든 자원은 다시금 청년을 비롯한 인구유입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수도권 일극화를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따른 수도권 과밀성장과 지방소멸의 위기감은 우리나라 지속가능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고용 창출의 주체인 기업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유도하거나, 기존 비수도권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함.
- 이에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부산상공회의소 및 울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적용」을 지난 2021년에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였으며, 제21대 대선에서도 이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각 정당에 건의하였음.
- 이와 관련해 2021년 1월에 국회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7607호)이 발의되어 지역의 성장동력이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었음.
- 동 개정법률안에는 법인세의 세율을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이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법인세율 개정안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초과누진세율	본사 소재지	과세표준	초과누진세율
2억원 이하	10%	수도권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비수도권	2억원 이하	5%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12%
3천억원 초과	25%		3천억원 초과	15%

※ 자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7607호) 비용추계서
 ※ 의안발의 당시 법인세율 기준

-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¹⁾에는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 적용에 따라 시행할 경우, 기업들로 하여금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헌법 제120조 제2항²⁾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언급되었으며,
- 이스라엘 등 해외국가에서 지역별 차등법인세율을 적용해 낙후지역의 산업고용 증대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음.

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21.11)
 2) 대한민국헌법 제120조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 관련 개정법률안에 따라 비수도권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5년간(2022년~2026년) 연평균 5.3조 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추산하였음.
- 이는 비수도권으로 기업과 일자리를 옮겨가도록 유도함으로써 현재 수도권 과밀과 비수도권 공동화의 진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더불어 매년 투입되는 국가균형발전 예산(2020년 기준 16.6조원)보다 적은 비용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좀 더 조속히 실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국가균형발전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범국가적 공동 목표이며, 이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비수도권으로의 기업 이전과 비수도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임.
- 하지만 이러한 지역민의 염원과 기대를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21년에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안타까운 상황임. 이에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바라는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과 지역민은 해당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II. 건의

- 비수도권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2107607호)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2023. 3. 30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구 자 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구 자 천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이 영 춘

통영상공회의소 회장 이 상 석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서 희 영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박 병 대

김해상공회의소 회장 박 명 진

밀양상공회의소 회장 손 영 준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박 계 출

거제상공회의소 회장 김 환 중